

군산시 공고 제2012-1031호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5. 15.

군 산 시 장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우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담당을 계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 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중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 (안 제4조)
- 다. 재정사항의 합의시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는 단서 신설 (안 22조)
- 라. 운영수당 현금지급 제한 (안 제52조)
- 마.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조항 신설(안 제52조의2 신설)
- 바. 경리관(분임경리관)이 매년 초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 통지 (안 제61조의2 신설)

사.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추가
(안 제79조)

야.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시 소멸시효 완성전 납부자 고지 의무
신설 (안 제80조제6항 신설)

자.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조항 삭제(안 제125조 삭제)

차.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와 검사자를 달리 지정(안 제127조) 등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
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0-4271, 팩스 063-452-8161, 전자우편 :
hee015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경리계(전화 063-450-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 중 “지출원---경리담당”을 “지출원---경리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을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으로, “일상경비출납원---각 관·과·소 경리업무담당”을 “일상경비출납원---각 관·과·소 경리업무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지출원---의정담당”을 “지출원---의정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 중 “지출원---경리업무담당”을 “지출원---경리업무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을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으로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경리업무담당”을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경리업무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일상경비출납원---경리업무담당”을 “일상경비출납원---경리업무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을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5호 중 “지출원---읍·면·동 총무업무담당”을 “지출원---읍·면·동 총무업무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담당”을 “수입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계장”으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담당”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계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부담금, 양여금”을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
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협의”를 “합의”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지방세법」 적용)”을 “(지방세 법규적용)”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 단서 중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
비”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

한 사항은 정보처리장치(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전자지출시
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정보처리장치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담당자를 말하고, 계약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관·과·소의 지출품의담당자 또는 원인행위요청담당자를 말한다)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제5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용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79조제5항 본문 중 “보통예금계좌”를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같음하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같음할 수 있다.

제8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11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7조제3항 중 “특히”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을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로 한다.

별표 1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중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81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 용)란 다음에 별지 제81-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1-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납부자주소	
성 명 _____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p>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 ----- -----.</p>
<p>1. 본청</p>	<p>1. ---</p>
<p>징수관 --- 자치행정국장</p>	<p>-----</p>
<p>분임징수관 --- 징수과장, 세외수입주관관·과·소장</p>	<p>----- -----</p>
<p>경리관 --- 자치행정국장</p>	<p>-----</p>
<p>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관·과·소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p>	<p>----- ----- -----</p>
<p>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p>	<p>-----</p>
<p>채권관리관 --- 소관관·과·소장</p>	<p>-----</p>
<p>총괄채무관리관 --- 자치행정국장</p>	<p>-----</p>
<p>채무관리관 --- 소관관·과·소장</p>	<p>-----</p>
<p>총괄기금관리관 --- 자치행정국장</p>	<p>-----</p>
<p>기금관리관 --- 소관관·과·소장</p>	<p>-----</p>
<p>지출원 --- 경리담당</p>	<p>지출원 --- 경리계장</p>
<p>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담당, <u>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u></p>	<p>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계장, <u>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u></p>
<p>일상경비출납원 --- 각관·과·<u>소 경리업무담당</u></p>	<p>일상경비출납원 --- 각관·과·<u>소 경리업무계장</u></p>
<p>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p>	<p>----- -----</p>

2. 군산시의회

징수관 --- 사무국장

분임징수관 --- 의사과장

경리관 --- 사무국장

분임경리관 --- 의사과장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지출원 --- 의정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
업무담당자

3. 제1관서

징수관 --- 관서의장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경리관 --- 관서의장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채권관리관 --- 관서의장

채무관리관 --- 관서의장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경리업무
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
업무담당자

4. 기타 관서·임시관서

2. -----

지출원 --- 의정계장

3. -----

지출원 --- 경리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경리업무
계장

4. -----

징 수 관 --- 관서의 장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
시관서의 장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
업무담당자

5. 읍·면·동

징 수 관 --- 읍·면·동장

경 리 관 --- 읍·면·동장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지 출 원 --- 읍·면·동 총무업
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읍·면·동 총
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읍·
면·동 총무업무담당

② ~ ⑤ (생 략)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
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
에게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생 략)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

5. -----

지 출 원 --- 읍·면·동 총무업
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읍·면·동 총
무업무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읍·
면·동 총무업무계장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부담금-----

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생략)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2. (생략)

3. 과오납금의 반환

4. (생략)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에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 6. (생략)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6. (현행과 같음)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 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 ③ 정보처리장치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 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같음한다. <후단 신설>

제58조(송금 통지) 별지 제73호서
식의 (송금·집합)지급명령 또
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
61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에 따
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별지 제71호서식의 송금통
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
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

-----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
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같음할 수 있다.

제58조(송금 통지) -----

-----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
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
정) 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
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용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
차) ① -----

음한다.

④·⑤ (생략)

<신설>

제112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당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79호서식의 지급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3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로 같음하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같음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112조(지급의 증명)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같음할 수 있다.

제113조(송금지급절차) -----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생략)
 <신 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② (생략)
 <신 설>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과 일계표) ① (생략)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10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과 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
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5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
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5조제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
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
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
을 구매할 수 있다.

<삭 제>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② (생략)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
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
정할 수 있다.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
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
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영관)를 달리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p> <p>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p> <p><input type="radio"/> ----</p> <p><input type="radio"/> -----</p> <p><input type="radio"/> <u>상하수도사업소</u></p> <p><input type="radio"/> -----</p>	<p><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p> <p>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p> <p><input type="radio"/> ----</p> <p><input type="radio"/> -----</p> <p><input type="radio"/> <u>수도사업소</u></p> <p><input type="radio"/> -----</p>

군산시 공고 제2012-1036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5. 15.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용어 통일 및 분류체계 단순화 (안 제3조 ~ 안 제39조)

○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잡종재산 ⇒ 일반재산

나. 수익계약 매각대상 기준 완화 (안 제38조제1항제4호)

○ 면적 : 동지역 1,000m² ⇒ 1,500m², 읍·면지역 2,000m² ⇒ 3,000m²

○ 건축연도 : 1981년 4월 30일 이전 ⇒ 1989년 1월 24일 이전

다. 청사 및 집무실의 면적기준 신설 (안 제45조의2)

- 본청 청사 기준 면적 : 17,759제곱미터 이하
- 시장 집무실 기준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비서실, 접견실 포함)
- 시의회 청사 기준 면적 : 3,351제곱미터 이하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청(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0-4273, 팩스 063-452-8161, 전자우편 : kyh4105@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전화 063-450-4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군산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산시”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6조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 ·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행정 · 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중 “행정 ·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전단 중 “1,000제곱미터”를 “1,500제곱미터”로,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이전”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49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를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 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본청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제외 면적은 시행령 제95조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 17,759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3,351제곱미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의</u> 공유 재산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군산시</u>----- ----- ----- ----- -----.</p>
<p>제2조(관리책임) ①<u>시장</u>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조(관리책임) ①<u>군산시장</u>(이하 “<u>시장</u>”이라 한다)-----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u>법</u>”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u>군산시</u>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u>령</u>”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u>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 ----- ----- ----- <u>군산시</u> (이하 “<u>시</u>”라 한다) ----- -----.</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 ·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생략)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생략)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 ·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 나. (생략)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6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

3. 행정재산-----

4. 일반재산-----

5. (현행과 같음)

③-----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2. 「건축법」 제57조제1항-----

3. (현행과 같음)

4. ----- 행정재산-----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3장 행정재산

제16조(관리 및 처분) -----

은 관리하는 행정재산 · 보존
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
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사용
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
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 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 수익허
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제18조(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

산 · 보존재산을 사용 · 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
시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19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

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 보존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부를 비치하고 기록 · 보존하여
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같음

----- 행정재산-----

-----.

제17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

-----.

② 행정재산-----

-----.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

산-----

-----.

1.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

치) ----- 행정
재산-----

할 수 있다.

제20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행정재산-----

②-----
----- 행정재산-----

----- 행정재산-----

-----.

③----- 행정
재산-----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생략)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1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생략)

제4장 잡종재산

제22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

④ (현행과 같음)

⑤-----

----- 행
정재산-----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4장 일반재산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일반재산-----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일반재산-----

-----.

③-----
----- 일반재산-----

-----.

1. ~ 4. (현행과 같음)

④-----

----- 일반재산-----

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

-----.

⑤-----

----- 일반재산-----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2. · 3. (현행과 같음)

4. -----
----- 1,500제곱미터 -----
----- 3,000
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
월24일이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부동산관리신탁 ·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신 설>

 -----.

제45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 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본청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제외 면적은 시행령 제95조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청 청사 : 17,759제곱미터
- 2. 시장 집무실 : 99제곱미터
- 3. 의회 청사 : 3,351제곱미터

군산시 공고 제2012-1037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5. 15.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용어 통일 및 분류체계 단순화(안 제2조 ~ 안 제29조)

○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잡종재산 ⇒ 일반재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
(안 제1조, 2조, 4조, 11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0-4273, 팩스 063-452-8161, 전자우편 : kyh4105@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전화 063-450-4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1호내지 6호외”를 “1호부터 6호까지외”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대장”을 “일반재산대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유재산 관리조례</u>----- ----- -----.</p>
<p>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생략)</p> <p>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99.11.30></p> <p>1. 본청에서 사용하는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 업무주관과장</p> <p>2. <u>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u>의 소속기관(이하 “관·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 관·소의장</p> <p>3. 본청 및 관·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 업무주관과장</p> <p>4. <u>잡종재산</u>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p>	<p>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행정재산</u> -----</p> <p>2. <u>군산시(이하 “시”라 한다)</u> ----- ----- ----- <u>행정재산</u> -----</p> <p>3. ----- ----- <u>행정재산</u> ----- -----</p> <p>4. <u>일반재산</u>----- ----- -----</p>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
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6. (생략)

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
정재산 및 보존재산 - 총무과
장, 읍·면·동장

8. 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잡
종재산은 회계과장

③ (생략)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
괄) ① ~ ③ (생략)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
로서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사유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
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30>

⑤·⑥ (생략)

제4조(관리책임) ① (생략)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

5. ----- 행정재
산 -----

6. (현행과 같음)

7. -----
행정재산 -----

8. 1호부터 6호까지외-----
-- 일반재산-----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
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재산-
----- 일반재
산-----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
음)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다. <개정 99.11.30 >

③ ~ ⑥ (생략)

제11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은익재산 신고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 . -----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 행정재산 -----

----- . -----

②행정재산-----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음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
 다. <개정 99.11.30, 2006.06.1
 5>

- 1. · 2. (생 략)
- 3. 보존재산대장
- 4. 잡종재산대장
- ② (생 략)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
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
 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
 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
 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 <삭 제>
- 4. 일반재산대장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
정재산-----

 ---.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

 -----.

군산시 고시 제2012-57호

**군산 임피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임피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5월 4일

□ 농공단지 지정(변경) 사항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군산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69-1번지 일원
- 면 적 : 239,187m²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 낙후된 군산시 임피면 일원에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
-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규 고용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함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군 산 시 장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1년 ~ 2013년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로 일괄 수(위)탁 계약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시행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표준산업 분류코드	유치업종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제조업(C)	합 계	180,860	감)4,848	176,012	1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3,571	증)23,921	67,492	38.3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767	증)1,114	13,881	7.9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7,601	감)28,340	39,261	22.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6,921	감)1,543	55,378	31.5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거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은 제외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239,187	-	239,187	100.0	
○ 산업시설용지	180,860	감)4,848	176,012	73.59	
· 단지조성	180,860	감)4,848	176,012	73.59	22블록
○ 지원시설용지	4,025	-	4,025	1.68	
· 공동이용시설	1,100	-	1,100	0.46	
· 저류지	2,700	-	2,700	1.13	
· 배수지	225	-	225	0.09	Q=235㎡/일
○ 공공시설용지	54,302	증)4,848	59,150	24.73	
· 도로	26,047	증)994	27,041	11.31	6조 1,734m
· 녹지	23,335	증)4,399	27,734	11.59	
· 배수로	4,920	감)545	4,375	1.83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교통시설계획

○ 도로시설 총괄(변경)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합계	6	1,726	22,221	-	-	-	1	249	4,700	5	1,477	17,521
변경	합계	6	1,734	22,807	-	-	-	1,	246	4,897	5	1,488	17,910
기정	대로		-	-	-	-	-	-	-	-	-	-	-
변경	대로		-	-	-	-	-	-	-	-	-	-	-
기정	중로	5	1,548	21,509	-	-	-	1	249	4,700	4	1,299	16,809
변경	중로	5	1,553	22,084	-	-	-	1	246	4,897	4	1,307	17,187
기정	소로	1	178	712	-	-	-	-	-	-	1	178	712
변경	소로	1	181	723	-	-	-	-	-	-	1	181	723

※기정 : 접도구역 면적 3,826㎡는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에 포함

변경 : 접도구역 면적 4,212㎡ 및 도시계획도로 22㎡를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면적에 포함

○ 도로시설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종별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	15~20	국지도로	249	532-9도	563-1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변경	중로	2	137	15~20	국지도로	246	532-9도	563-1답	일반도로	구역내		
기정	중로	3	1	12~15	국지도로	491	563-1답	569-11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변경	중로	3	66	12~15	국지도로	486	563-1답	569-11답	일반도로	구역내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380	563-3답	560-5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변경	중로	3	67	14	국지도로	321	563-3답	560-5답	일반도로	구역내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318	589구	561-2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변경	중로	3	68	13	국지도로	413	589구	561-2답	일반도로	구역내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110	143-4임	147-2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변경	중로	3	69	12	국지도로	87	143-4임	147-2답	일반도로	구역내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78	143-4임	154-1전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변경	소로	3	743	4	국지도로	181	143-4임	154-1전	일반도로	구역내		

■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 수도공급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A-1	9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임피면 축산리 154-2번지 일원	225	-	225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 공간시설계획

○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A-4	85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152-1번지 일원	2,505	증)1,416	3,921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변경	A-5	86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143-2번지 일원	364	감)49	315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변경	B-8	87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103-1번지 일원	2,379	증)207	2,586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변경	E-8	88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91번지 일원	364	증)405	769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변경	E-9	89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60-5번지 일원	479	감)155	324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변경	B-9	90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143-4번지 일원	633	감)125	508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변경	<u>E-7</u> E-11	91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90번지 일원	407 701	감)34	1,074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변경	E-10	92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92번지 일원	486	감)7	479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변경	D-9	93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63-8번지 일원	6,961	감)72	6,889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변경	D-10	94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70-1번지 일원	4,442	감)1,056	3,386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변경	E-6	95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68-1번지 일원	3,614	증)3,869	7,483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 방제시설계획

○ 유수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D-5	3	유수지	저류시설	임피면 축산리 563-11번지 일원	2,700	-	2,700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7.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구 분	규 모	금 액 (백만원)	비 고
임피농공단지 단지조성비	239,187m ²	1,447	국비 1,085 지방비 362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군산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성 명 : 군산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의 목적

- 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 나. 낙후된 군산시 임피면 일원에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
- 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규 고용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함

○사업의 개요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비 고
면 적	239,187	176,012	4,025	31,416	27,734	
구 성 비	100	73.59	1.68	13.14	11.5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69-1번지 일원
- 면 적 : 239,187m²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 시행방법 : 공영개발(군산시장)
- 시행기간 : 2011 ~ 2013년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239,187	-	239,187	100	-
녹지지역	소계	49,928	감)49,928	-	-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49,928	감)49,928	-	-
	자연녹지지역	-	-	-	-
관리지역	소계	65,159	증)174,028	239,187	100
	보전관리지역	65,159	감)65,159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증)239,187	239,187	100
농림지역	124,100	감)124,100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임피·축산 569-1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39,187	100%이하	· 임피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6	임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임피·축산 569-1번지일원	-	증)239,187	239,187	금회	

○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26	임피 농공단지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239,187m ²	·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후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신설	합계	6	1,734	22,807	-	-	-	1	246	4,897	5	1,488	17,910
	대로	-	-	-	-	-	-	-	-	-	-	-	-
	중로	5	1,553	22,084	-	-	-	1	246	4,897	4	1,307	17,187
	소로	1	181	723	-	-	-	-	-	-	1	181	723

※ 도로면적 : 27,041m² (접도구역 4,212m² 및 도시계획도로 22m² 포함)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종별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합 계						1,734						
신설	중로	2	137	15~20	국지도로	246	532-9도	563-1답	일반도로	구역내	금회	
신설	중로	3	66	12~15	국지도로	486	563-1답	569-11답	일반도로	구역내	금회	
신설	중로	3	67	14	국지도로	321	563-3답	560-5답	일반도로	구역내	금회	
신설	중로	3	68	13	국지도로	413	589구	561-2답	일반도로	구역내	금회	
신설	중로	3	69	12	국지도로	87	143-4임	147-2답	일반도로	구역내	금회	
신설	소로	3	743	4	국지도로	181	143-4임	154-1전	일반도로	구역내	금회	

○ 결정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로2-137	○ 노선신설 - 규모 : L=246m, B=15~20m	○ 단지내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함
-	중로3-66	○ 노선신설 - 규모 : L=486m, B=12~15m	○ 시설로의 원활한 집분산을 유도하기 위함
-	중로3-67	○ 노선신설 - 규모 : L=321m, B=14m	○ 시설로의 원활한 집분산을 유도하기 위함
-	중로3-68	○ 노선신설 - 규모 : L=413m, B=13m	○ 시설로의 원활한 집분산을 유도하기 위함
-	중로3-69	○ 노선신설 - 규모 : L=87m, B=12m	○ 시설로의 원활한 집분산을 유도하기 위함
-	소로3-743	○ 노선신설 - 규모 : L=181m, B=4m	○ 배수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 도로로 활용하기 위함.

(2) 수도공급설비(배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임피면 축산리 154-2번지 일원	-	증)225	225	금회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9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배수지결정 면적 : 225m ²	○ 구역내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결정

(3)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5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152-1번지 일원	-	증) 3,921	3,921	금회	
신설	86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143-2번지 일원	-	증) 315	315	금회	
신설	87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103-1번지 일원	-	증) 2,586	2,586	금회	
신설	88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91번지 일원	-	증) 769	769	금회	
신설	89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60-5번지 일원	-	증) 324	324	금회	
신설	90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143-4번지 일원	-	증) 508	508	금회	
신설	91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90번지 일원	-	증) 1,074	1,074	금회	
신설	92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92번지 일원	-	증) 479	479	금회	
신설	93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63-8번지 일원	-	증) 6,889	6,889	금회	
신설	94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70-1번지 일원	-	증) 3,386	3,386	금회	
신설	95	녹지	완충녹지	임피면 축산리 568-1번지 일원	-	증) 7,483	7,483	금회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85	완충녹지	3,921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지와 주변 지역간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완충녹지를 계획
86	완충녹지	315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지와 주변 지역간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완충녹지를 계획
87	완충녹지	2,586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지와 주변 지역간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완충녹지를 계획
88	완충녹지	769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지와 주변 지역간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완충녹지를 계획
89	완충녹지	324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지와 주변 지역간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완충녹지를 계획
90	완충녹지	508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지와 주변 지역간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완충녹지를 계획
91	완충녹지	1,074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지와 주변 지역간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완충녹지를 계획
92	완충녹지	479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지와 주변 지역간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완충녹지를 계획
93	완충녹지	6,889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지와 주변 지역간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완충녹지를 계획
94	완충녹지	3,386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지와 주변 지역간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완충녹지를 계획
95	완충녹지	7,483	◦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지와 주변 지역간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자 완충녹지를 계획

(4) 우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우수지	저류시설	임피면 축산리 563-11번지 일원	-	증) 2,700	2,700	금회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3	우수지	우수지결정 면적 : 2,700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최종배출구에 비점오염원저감 시설로 우수지(저류시설)를 계획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 계	-	207,771	-	-	207,771	-	-
1	A	18,000	A1	축산리 154-2번지 일원	225	수도공급설비	·합병가능, 분할불허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으로 허용)
			A2	축산리 152-1번지 일원	3,921	완충녹지	
			A3	축산리 154-11번지 일원	7,927	공업용지	
			A4	축산리 154-23번지 일원	5,612	공업용지	
			A5	축산리 143-2번지 일원	315	완충녹지	
	B	43,148	B1	축산리 103-1번지 일원	2,586	완충녹지	·합병가능, 분할불허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으로 허용)
			B2	축산리 562-1번지 일원	4,894	공업용지	
			B3	축산리 104번지 일원	6,704	공업용지	
			B4	축산리 103-1번지 일원	7,869	공업용지	
			B5	축산리 101-1번지 일원	9,995	공업용지	
			B6	축산리 559-4번지 일원	10,007	공업용지	
			B7	축산리 559-5번지 일원	769	완충녹지	
			B8	축산리 560-5번지 일원	324	완충녹지	
	C	45,522	C1	축산리 143-4번지 일원	508	완충녹지	·합병·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C2	축산리 563-1번지 일원	8,269	공업용지	
			C3	축산리 562-4번지 일원	9,458	공업용지	
			C4	축산리 103-1번지 일원	9,579	공업용지	
			C5	축산리 101-9번지 일원	9,700	공업용지	
			C6	축산리 561-2번지 일원	6,455	공업용지	
			C7	축산리 590번지 일원	1,074	완충녹지	
			C8	축산리 592번지 일원	479	완충녹지	
	D	25,921	D1	축산리 143-4번지 일원	600	공동이용용지	·합병가능, 분할불허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으로 허용)
			D2	축산리 563-5번지 일원	6,889	완충녹지	
			D3	축산리 563-5번지 일원	8,130	공업용지	
			D4	축산리 563-8번지 일원	7,102	공업용지	
			D5	축산리 588번지 일원	500	공동이용용지	
D6			축산리 563-10번지 일원	2,700	유수지		
E	27,639	E1	축산리 570-4번지 일원	3,386	완충녹지	·합병가능, 분할불허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으로 허용)	
		E2	축산리 570-2번지 일원	7,648	공업용지		
		E3	축산리 570-4번지 일원	7,982	공업용지		
		E4	축산리 570-6번지 일원	8,623	공업용지		
F	47,541	F1	축산리 568-9번지 일원	8,504	공업용지	·합병가능, 분할불허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으로 허용)	
		F2	축산리 569-10번지 일원	8,121	공업용지		
		F3	축산리 568-7번지 일원	8,457	공업용지		
		F4	축산리 568-6번지 일원	8,021	공업용지		
		F5	축산리 568-2번지 일원	6,955	공업용지		
		F6	축산리 568-1번지 일원	7,483	완충녹지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A3, A4, B2~B6, C2~C6, D3, D4, E2~E4 F1~F5 (공업용지)	용도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사용 권장 · 지붕의 경우 파랑색계열의 색채사용 권장 · 냉난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옥상층의 시설물(물탱크, 냉각탑, 기기실, 환기구 등)등의 경관 불량 요소는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단, 방송·통신용 시설 제외)		
		색채	주조색	·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열 사용 · 원색 사용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	·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高明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D1, D5 (공공시설용지)	용도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관리사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사용 권장 · 냉난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옥상층의 시설물(물탱크, 냉각탑, 기기실, 환기구 등)등의 경관 불량 요소는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단, 방송·통신용 시설 제외)		
		색채	주조색	·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열 사용 · 원색 사용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			·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高明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3) 기타사항(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총계	239,187	100.0	
공업용지	176,012	73.59	공장
공공시설용지	31,066	12.99	
도로	27,041	11.31	단지내도로
지원·부대시설	1,100	0.46	공동이용시설
저류지	2,700	1.13	유수지
배수지	225	0.09	수도공급설비
녹지용지	32,109	13.42	
완충녹지	27,734	11.59	완충녹지
녹지(구거)	4,375	1.83	배수로

나) 옥외 광고물 계획

-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군산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용하되, 추가적인 설치 기준을 준수한다.
 - 옥상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 간판 설치 금지
 - 가로형 간판 중 판류형은 원칙적으로 설치금지하고 입체형만 설치 가능
 - 지주 이용간판은 1개 획지에 1개까지 설치 가능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이 있는 경우,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안에 설치 불허

다) 교통처리계획

- 차량 진·출입 허용 및 불허구간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를 준용하여 불허구간을 지정하고, 허용구간은 기타 도로와 연결한 획지면을 허용.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불허 및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진·출입 구간은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중 건축물 등에 결정도에 따르며 불허구간 지정, 허용구간은 기타 도로와 연결한 획지면을 허용함. · 허용구간내 주차장,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추가 설치를 허용. 단, 농공단지 관리부서 및 해당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군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고시

가. 농공단지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고시사항

○명 칭 : 군산 임피농공단지

○위 치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69-1번지 일원

○면 적 : 239,187m²

※ 지형도면 및 전산자료 : 게재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팀(☎ 063-850-8277) 및 군산시 투자지원과(☎ 063-450-617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시간 : 평일 09:00 ~ 18:00

단,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별첨)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토지 세목조서

토지 조서 (총괄)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군산 임피농공단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군산시장							
	주소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144필지							
	주소										
토지의 내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구분	성명	주소	
계				263,128	239,187						
1	축산리	97-1	대	342	342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함정리 157-6				
2	축산리	97-2	답	76	76	한국농어촌공사					
3	축산리	101-1	임	1605	1605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57-6				
4	축산리	101-3	전	1351	1351	박용성	나운동 751-5 신한파크101호				
5	축산리	101-8	임	6075	6075	최영권	명산동 7-7				
6	축산리	101-9	임	4471	4471	한국농어촌공사					
7	축산리	102-1	묘	516	516	고천형빈	임피면 미원리 350				
8	축산리	102-2	전	1699	1699	오세봉외3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1-28, 402호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9	축산리	103-1	임	11831	11831	한국농어촌공사					
10	축산리	104	창	1507	1507	장민	축산리 104	근저당권	임피면 읍내리480-5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480-5	
11	축산리	106	대	659	659	장민	축산리 104	근저당권	임피면 읍내리480-5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480-5	
12	축산리	106-1	답	1090	1090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근저당권	임피면 읍내리480-5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480-5	
13	축산리	109	답	429	429	한국농어촌공사					
14	축산리	124-1	답	346	346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5	축산리	135-3	답	85	85	한국농어촌공사					
16	축산리	136-3	도	6	6	오창성	축산리 35				
17	축산리	136-4	도	10	10	오창성	축산리 35				
18	축산리	136-5	도	18	18	오창성	축산리 35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구분	성명	주소	
19	축산리	137-1	대	71	71	한국농어촌공사					
20	축산리	137-2	도	17	17	오창성	축산리 35				
21	축산리	137-3	대	22	22	한국농어촌공사					
22	축산리	138-1	전	474	474	한국농어촌공사					
23	축산리	138-3	도	112	112	강우현	임피면 읍내리 436				
24	축산리	138-4	대	50	50	한국농어촌공사					
25	축산리	138-6	전	373	373	한국농어촌공사					
26	축산리	138-7	전	84	84	한국농어촌공사					
27	축산리	139-1	도	7	7	오창성	임피면 축산리 35				
28	축산리	139-2	대	612	612	한국농어촌공사					
29	축산리	140-1	답	1315	1315	한국농어촌공사					
30	축산리	141	대	1385	1385	한국농어촌공사					
31	축산리	142	전	747	747	한국농어촌공사					
32	축산리	143-1	임	155	155	강병식					
33	축산리	143-2	임	4727	4727	이용득	서수면 서수리 447	압류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4	축산리	143-4	임	5289	5289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35	축산리	143-6	임	609	609	한국농어촌공사					
36	축산리	145-1	답	594	594	한국농어촌공사					
37	축산리	146-1	도	7	7	국(건설부)					
38	축산리	146-2	도	7	7	국(건설부)					
39	축산리	146-3	답	2238	2238	한국농어촌공사					
40	축산리	146-5	답	134	134	한국농어촌공사					
41	축산리	147-2	답	483	483	한국농어촌공사					
42	축산리	147-4	답	2	2	한국농어촌공사					
43	축산리	152-1	전	1031	1031	한국농어촌공사					
44	축산리	152-2	도	63	63	한국농어촌공사					
45	축산리	152-3	전	1191	1191	한국농어촌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구분	성명	주소	
46	축산리	152-6	전	155	155	한국농어촌공사					
47	축산리	153	전	184	184	국(건설부)					
48	축산리	154-1	전	614	614	국(재정경제부)					
49	축산리	154-2	임	1454	1454	한국농어촌공사					
50	축산리	154-3	임	670	670	국(재정경제부)					
51	축산리	154-6	임	40	40	국(재정경제부)					
52	축산리	154-7	임	1188	1188	한국농어촌공사					
53	축산리	154-8	임	547	547	김덕재	서수면 서수리 273-4				
54	축산리	154-9	임	586	586	한국농어촌공사					
55	축산리	154-10	임	108	108	강병식					
56	축산리	154-11	임	477	477	최무철	임피면 월하리 515-4				
57	축산리	154-14	전	522	522	한국농어촌공사					
58	축산리	154-15	전	684	684	국(재정경제부)					
59	축산리	154-16	임	2303	2303	국(재정경제부)					
60	축산리	154-20	임	309	309	국(재정경제부)					
61	축산리	154-21	임	147	147	한국농어촌공사					
62	축산리	154-22	임	121	121	한국농어촌공사					
63	축산리	154-23	임	141	141	국(재정경제부)					
64	축산리	154-24	임	145	145	한국농어촌공사					
65	축산리	155	전	2070	2070	한국농어촌공사					
66	축산리	173	전	495	495	한국농어촌공사					
67	축산리	173-2	전	78	78	한국농어촌공사					
68	축산리	532	도	5693	862	국					
69	축산리	532-9	도	1369	660	국(재정경제부)					
70	축산리	559-1	답	1788	1788	한국농어촌공사					
71	축산리	559-2	답	1848	1848	한국농어촌공사					
72	축산리	559-3	답	2103	2103	한국농어촌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구분	성명	주소	
73	축산리	559-4	답	1980	1980	한국농어촌공사					
74	축산리	559-5	답	1847	1847	한국농어촌공사					
75	축산리	560-1	답	1836	1836	한국농어촌공사					
76	축산리	560-2	답	1242	1242	한국농어촌공사					
77	축산리	560-3	답	2328	2328	한국농어촌공사					
78	축산리	560-4	답	2118	2118	한국농어촌공사					
79	축산리	560-5	답	2940	2940	한국농어촌공사					
80	축산리	561-1	답	3612	3612	한국농어촌공사					
81	축산리	561-2	답	3752	3752	한국농어촌공사					
82	축산리	562-1	답	2772	2772	한국농어촌공사					
83	축산리	562-2	답	3372	3372	한국농어촌공사					
84	축산리	562-3	답	4067	4067	한국농어촌공사					
85	축산리	562-4	답	1776	1776	한국농어촌공사					
86	축산리	562-5	답	786	786	한국농어촌공사					
87	축산리	562-6	답	1182	1182	한국농어촌공사					
88	축산리	563-1	답	2568	2568	한국농어촌공사					
89	축산리	563-2	답	3938	3938	한국농어촌공사					
90	축산리	563-3	답	3954	3954	한국농어촌공사					
91	축산리	563-4	답	3972	3972	한국농어촌공사					
92	축산리	563-5	답	4122	4122	한국농어촌공사					
93	축산리	563-6	답	1902	1902	한국농어촌공사					
94	축산리	563-7	답	2562	2562	유영우	서수면 서수리 1263				
95	축산리	563-8	답	4007	4007	한국농어촌공사					
96	축산리	563-9	답	1500	1500	한국농어촌공사					

연 번	소 재 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전 체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구분	성명	주소	
97	축산리	563-10	답	1214	1214	국(재정경제원)					
98	축산리	563-11	답	1236	1236	국(재정경제원)					
99	축산리	568-1	답	2284	2284	한국농어촌공사					
100	축산리	568-2	답	2792	2792	한국농어촌공사					
101	축산리	568-3	답	478	478	한국농어촌공사					
102	축산리	568-4	답	1548	1548	한국농어촌공사					
103	축산리	568-5	답	738	738	한국농어촌공사					
104	축산리	568-6	답	2736	2736	한국농어촌공사					
105	축산리	568-7	답	2898	2898	한국농어촌공사					
106	축산리	568-8	답	4026	4026	한국농어촌공사					
107	축산리	568-9	답	4000	4000	한국농어촌공사					
108	축산리	568-10	답	4024	4024	한국농어촌공사					
109	축산리	568-11	답	1033	1033	진병덕	축산리 356-1				
110	축산리	568-12	답	2941	2941	진병덕	축산리 356-1				
111	축산리	568-13	답	1856	1856	한국농어촌공사					
112	축산리	568-14	답	2187	2187	한국농어촌공사					
113	축산리	569-1	답	832	832	한국농어촌공사					
114	축산리	569-2	답	911	911	한국농어촌공사					
115	축산리	569-3	답	2480	2480	한국농어촌공사					
116	축산리	569-4	전	2613	2613	한국농어촌공사					
117	축산리	569-5	답	2495	2495	한국농어촌공사					
118	축산리	569-6	답	994	994	한국농어촌공사					
119	축산리	569-7	답	1138	1138	한국농어촌공사					
120	축산리	569-8	답	2088	2088	한국농어촌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구분	성명	주소	
121	축산리	569-9	답	1557	1557	한국농어촌공사					
122	축산리	569-10	답	1756	1756	한국농어촌공사					
123	축산리	569-11	답	1989	1989	한국농어촌공사					
124	축산리	569-12	답	1665	1665	한국농어촌공사					
125	축산리	569-13	답	498	498	한국농어촌공사					
126	축산리	569-14	답	2161	2161	한국농어촌공사					
127	축산리	570-1	답	2864	2864	한국농어촌공사					
128	축산리	570-2	답	1200	1200	한국농어촌공사					
129	축산리	570-3	답	4085	4085	한국농어촌공사					
130	축산리	570-4	답	4045	4045	한국농어촌공사					
131	축산리	570-5	답	1600	1600	한국농어촌공사					
132	축산리	570-6	답	2426	2426	한국농어촌공사					
133	축산리	570-7	답	1644	1644	한국농어촌공사					
134	축산리	583	구	2243	2243	국(농수산부)					
135	축산리	584	도	2611	1562	국(농수산부)					
136	축산리	585	구	8776	3085	국(농수산부)					
137	축산리	586	도	370	370	국(농수산부)					
138	축산리	587	도	136	136	국(농수산부)					
139	축산리	588	구	582	582	국(농수산부)					
140	축산리	589	구	2296	2296	국(농수산부)					
141	축산리	590	도	3742	2336	국(농수산부)					
142	축산리	591	구	17555	7649	국(농수산부)					
143	축산리	592	구	1920	1804	국(농수산부)					
144	축산리	593	도	1976	1973	국(농수산부)					

○ 물건조서(지장물)

물 건 조 서 (총 괄)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임피 농공단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군산시장					
	주 소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물건의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계								
1	축산리	97-1	주택	목조스레트	44㎡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학3리168-9	
2			가추	목조스레트	6㎡	"	"	
3			까테기	철파이프스레트	13.2㎡	"	"	
4			창고및 화장실	목조스레트 (일부블록)	12㎡	"	"	
5			우물		1식	"	"	
6			바닥	콘크리트및 보도블록	58㎡	"	"	
7			소나무		22주	"	"	
8			장미		1주	"	"	
9			감나무		2주	"	"	
10			꽃사과나무		1주	"	"	
11			뽕나무		11주	"	"	
12			업나무		3주	"	"	
13	축산리	97-2	깨		76㎡	동상새마을회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91-1	
14	축산리	101-1	고추		1,605㎡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학3리168-9	
15			뽕나무		9주	"	"	
16			감나무		4주	"	"	
17			대추나무		9주	"	"	
18			사과나무		2주	"	"	
19			포도나무		5주	"	"	
20			배나무		2주	"	"	
21			복숭아나무		3주	"	"	
22			석류나무		1주	"	"	
23			자두나무		11주	"	"	
24			뽕나무		4주	"	"	
25			헛개나무		5주	"	"	

연 번	소 재 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26	축산리	101-1	단풍나무		1주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학3리168-9	
27		101-3	대문	철재	1식	"	"	
28			고추등		1,351m ²	박용성	군산시 수송동 한라비발디2단지201/1902	
29			감나무		629주	"	"	
30			뽕나무		14주	"	"	
31			묘지		단장 2기	강홍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25번지 2층	
32	축산리	101-8	느티나무		3주	최영권	군산시 명산동 7-7번지	
33			뽕나무		5주	"	"	
34			소나무		2주	"	"	
35			밤나무		12주	"	"	
36			감나무		1주	"	"	
37	축산리	101-9	묘지		단장 5기 합장 2기	한영조씨고부공파 농은종중	군산시 미원리 324	
38	축산리	102-1	묘지		단장 1기 합장 7기	오세봉외3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1-28번지 402호	
39			둘레석		8식	"	"	
40			비석		8식	"	"	
41			상석		1식	"	"	
42			항로석		1식	"	"	
43			망주석		2식	"	"	
44			배수관	350mm*350mm ㄱ형콘크리트	60M	"	"	
45			잔디		50m ²	"	"	
46			황금측백		3주	"	"	
47			철쭉		3주	"	"	
48			뽕나무		25주	"	"	
49	축산리	102-2	사과나무		180주	"	"	
50			배나무		156주	"	"	
51			매실나무		82주	"	"	
52			대추나무		10주	"	"	
53			감나무		22주	"	"	
54			깨		1,699m ²			

연 번	소 재 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55	축산리	103-1	묘지		단장 7기	조성국	경기도 분당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성환빌라 207/401	
56			묘지		단장 6기	조성길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324번지	
57			둘레석		2식	조성길외1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324번지	
58			비 석		4식	"	"	
59			상석		1식	"	"	
60	축산리	104.106 106-1,124-1	울타리	철재웬스	60M	장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24	
61			대문	철재	1식	"	"	
62			창고1	철골강판	162m ²	"	"	
63			창고2	철골강판	162m ²	"	"	
64			창고3	철골강판	90m ²	"	"	
65			까데기	철파이프합석	40m ²	"	"	
66			창고4	철재컨테이너	5m ²	"	"	
67			창고5	목조목재합판	1식	"	"	
68			주택	조적조(시멘트블럭), 샌드위치판넬(2층부분 및 십야전기포함)	108m ²	"	"	
69			가추	새시조판넬	39m ²	"	"	
70			사무실	조적조슬래브	27m ²	"	"	
71			차양	목조스레트	5m ²	"	"	
72			창고6	경량철골판넬	27m ²	"	"	
73			바닥1	자갈	1,116m ²	"	"	
74			바닥2	콘크리트	1,000m ²	"	"	
75			바닥3	잔디및화강석	70m ²	"	"	
76			잔디		165.3m ²	"	"	
77			수도설비	250mm고무파이프,수도꼭지포함	1식	"	"	
78			울타리	철파이프(축산용)	130M	"	"	
79			계사	철파이프스레트	6m ²	"	"	
80			축사	철계스레트	11.6m ²	"	"	
81			물탱크설비 공작물	철파이프 콘크리트 물탱크	1식	"	"	
82			관정	식수용	1식	"	"	
83			화단	견치석	1식	"	"	
84			배수관1	100mm PVC	29M	"	"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85	축산리	104.106 106-1,124-1	배수관2	300mm 콘크리트	71M	장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24	
86			배수관3	800*300mm, ㄷ자형콘크리트	90M	"	"	
87			영업보상	지평선파렛트(제품,설비, 간판등포함)	1식	"	"	
88			은행나무		2주	"	"	
89			뽕나무		10주	"	"	
90			매실나무		8주	"	"	
91			포도나무		2주	"	"	
92			모과나무		3주	"	"	
93			살구나무		1주	"	"	
94			자두나무		1주	"	"	
95			단감나무		2주	"	"	
96			대봉시감		8주	"	"	
97			밤나무		2주	"	"	
98			꾸지붕		1주	"	"	
99			대추나무		7주	"	"	
100			석류나무		2주	"	"	
101			헛개나무		1주	"	"	
102			두충나무		1주	"	"	
103			목단		3주	"	"	
104			보리수		1주	"	"	
105			오가피		16주	"	"	
106			구기차		6주	"	"	
107			꽃사과나무		1주	"	"	
108			앵두나무		1주	"	"	
109			업나무		2주	"	"	
110			느릅나무		11주	"	"	
111			골담초		8주	"	"	
112			남천		1주	"	"	
113			사철나무		30주	"	"	
114			옷나무		2주	"	"	
115			자귀나무		1주	"	"	
116			두릅나무		2주	"	"	
117			벗나무		1주	"	"	
118			느티나무		85주	"	"	
119			설토화		3주	"	"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120	축산리	104.106 106-1,124-1	명자나무		11주	장 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24	
121			개나리		3주	"	"	
122			황금측백		1주	"	"	
123			라일락		3주	"	"	
124			철쭉		69주	"	"	
125			홍단풍		1주	"	"	
126			청단풍		1주	"	"	
127			백일홍		1주	"	"	
128			눈향		2주	"	"	
129			조팝나무		3주	"	"	
130			소나무(본재)		1주	"	"	
131			주목		5주	"	"	
132			유카		11주	"	"	
133			동백(소)		14주	"	"	
134			동백(대)		18주	"	"	
135			이슬라엘동백		1주	"	"	
136			화살나무		4주	"	"	
137			수국		5주	"	"	
138			회양목		20주	"	"	
139			작약		6주	"	"	
140	축산리	137-1,137-2,138-3,138-4,138-7,139-1,139-2	주택	적벽돌슬라브 (배란다,계단, 심야브일러, 태양열온수포 합)	105.3m ²	한국농어촌공사		
141			비닐하우스	철재	26.1m ²	"		
142			다용도실	적벽돌슬라브 (옥상계단포함)	47.9m ²	"		
143			까데기	철과이프 스레트	6.7m ²	"		
144			창고	적벽돌스레트	41.6m ²	"		
145			바닥	콘크리트	240.9m ²	"		
146			담장	적벽돌	88.8M	"		
147			대문	철재	2식	"		
148			화단		2식	"		
149			건사	목재스레트	1식	"		
150			계사울타리	철과이프	10M	"		
151			건사	철재	5.2m ²	"		
152			설토화		2주	"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153	축산리	137-1,137-2,138-3,138-4,138-7,139-1,139-2	라일라		2주	한국농어촌공사		
154			자두나무		2주	"		
155			단풍나무		2주	"		
156			소나무		6주	"		
157			감나무		2주	"		
158			업나무		1주	"		
159			철쭉		13주	"		
160			자목련		1주	"		
161			매실나무		1주	"		
162			동백나무		1주	"		
163			포도나무		3주	"		
164			팽팡나무		2주	"		
165			피라칸사스		1주	"		
166			드릅나무		1주	"		
167			선주목		3주	"		
168			소나무		2주	"		
169			철쭉		7주	"		
170			동백나무		1주	"		
171			남천		1속	"		
172			주목		2주	"		
173			은사철나무		1주	"		
174			산당화		1속	"		
175			자목련		1주	"		
176			장미		1주	"		
177			사철나무		1주	"		
178			백목련		1주	"		
179			산딸나무		1주	"		
180			철쭉		1속	"		
181			황금측백		1주	"		
182			화살나무		1주	"		
183			감나무		2주	"		
184			구기자		5M	"		
185			보리수		1주	"		
186			등나무		1주	"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187	축산리	140-1,135-3	소나무		4주	한국농어촌공사		
188			모과나무		4주	"		
189			벚나무		1주	"		
190			살구나무		1주	"		
191			감나무		9주	"		
192			탱자울타리		7M	"		
193			사철나무		1속	"		
194			밤나무		2주	"		
195			매실나무		3주	"		
196			백일홍		2주	"		
197			복숭아나무		1주	"		
198			꽃봉숭아 나무		2주	"		
199			석류나무		1주	"		
200			측백나무		3주	"		
201			뽕나무		3주	"		
202	축산리	140-1	벼		1,315			
203	축산리	141	창고	목조스레트	31m ² m ²	한국농어촌공사		
204			주택	조적조 기와강판	93.8m ²	한국농어촌공사		
205			까데기	철파이프 합석	15m ²	"		
206			창고	조립식판넬	28.4m ²	"		
207			담장	조립식	18M	"		
208			바닥	자갈,콘크리 트보도블럭	96m ²	"		
209			창고	철파이프 강판지붕	2.5m ²	"		
210			냉장고		1식	"		
211			장독대		10m ²	"		
212			외등		2개	"		
213			화단		2식	"		
214			울타리	측백	12M	"		
215			울타리	사철나무 회양목	10M	"		
216			잔디		21m ²	"		
217			옥향		2주	"		
218			동백		1주	"		
219			가이즈카 향나무		4주	"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220	축산리	141	사철나무		3주	한국농어촌공사		
221			대추나무		24주	"		
222			감나무		3주	"		
223			단풍나무		1주	"		
224			황금측백		1주	"		
225			주택	시멘트 블록합석	54.3m ²	한국농어촌공사		
226			보일러실	블럭스레트	3.8m ²	"		
227			까데기	철파이프합석	17.3m ²	"		
228			창고	블럭스레트	17.5m ²	"		
229			화장실	블럭스레트	6.9m ²	"		
230			건사	목조스레트	1식	"		
231			수도간	콘크리트	1식	"		
232			관정	식수용	1식	"		
233			우물		1식	"		
234			담장	블록,조립식	30M	"		
235			감나무		1주	"		
236			업나무		1주	"		
237			단감나무		1주	"		
238			동력		1식	최상규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41	
239	축산리	142	벼		747m ²	"	"	
240	축산리	143-2	묘지		단장 5기	이형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삼천하이츠 102동 302호	
241			묘지		단장 1기	최호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640 남양황실@2동 301호	
242			올타리 대문포함	철파이프 강관	78M	"	"	
243			묘지		단장 3기	이 철	전남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292-1	
244			자재	거푸집 철파이프등	1식	최호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640 남양황실@2동 301호	
245			비석		3식	이형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삼천하이츠 102동 302호	
246			상석		3식	"	"	
247			항록석		3식	"	"	
248			황금측백		8주	"	"	
249	축산리	143-4	고추등		826m ²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250			망주석		2식	"	"	

연 번	소 재 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251	축산리	143-4	상석		4식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252			항로석		4식	"	"	
253			황금축백		3주	"	"	
254			묘지		단장 6기 합장 2기	"	"	
255	축산리	145-1	벼		594m ²	정인창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89	
256	축산리	146-3	벼		2,238m ²	박중호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89	
257	축산리	147-2	벼		483m ²	정인창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89	
258	축산리	152-1	벼		1,031m ²	백정덕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51번지	
259	축산리	152-3	벼		1,191m ²	"	"	
260	축산리	153	고추		184m ²	국(건교부)		
261	축산리	154-1	묘지		단상 2기	이종일	군산시 구암동 250-3번지	
262			비닐하우스	철재	9m ²	한중훈	군산시 미룡동 440-1	
263			축백나무	묘지수목	4주	임규석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7	
264			철 쪽	묘지수목	3주	"	"	
265	축산리	154-2	하우스1	철재	81.8m ²	한중훈	군산시 미룡동 440-1	
266			하우스2	철재	79.2m ²	"	"	
267			사무실	철재컨테이너	1식	"	"	
268			화장실	이동식 FRP	1식	"	"	
269			자재	목재	1식	"	"	
270			적벽돌제조기	레일포함	1식	"	"	
271			전기장치	상상동력 6KW	1식	"	"	
272	축산리	154-3	묘지		단상1기	임규석	서울 용산구 후암동 114-12	
273			묘지		단상 3기	오정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39-1	
274		154-4	묘지		단상1기	임규석	서울 용산구 후암동 114-12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275	축산리	154-7	묘지		단상 6기	한중훈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160약탕골찜질방	
276	축산리	154-8	묘지		단상 4기 합장 1기	김덕재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273-4	
277	축산리	154-9	묘지		단상 2기	최일문	군산시 경암동 635-19	
278	축산리	154-11	묘지		단상 1기	최무철	익산시 중앙동3가 144-10	
279			백일홍		251주	"	"	
280			밥나무		5주	"	"	
281	축산리	154-14	옻막	목재	1식	임규석	서울 용산구 후암동 114-12	
282			무궁화		4주	이종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54-14	
283			소나무		2주			
284			밥나무		41주			
285			고추		522m ²	신동욱	익산시 선화로33길 10	
286	축산리	154-15	고추		684m ²	(국)재정경제부		
287			묘지		단상 1기	이종일	군산시 구암동 250-3	
288	축산리	154-16	묘지		단상 2기	오재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12-10 201호	
289			매실나무		250주	장영수	익산시 함라면 신동리 759-10	
290			은행나무		250주	"	"	
291			오가피		1주	"	"	
292	축산리	154-23	관정	식수용 (관정사포함)	1식	한국농어촌공사		
293	축산리	138-1 155	주택(숙소)	조립식판넬	32.2m ²	한국농어촌공사		
294			사무실1	철재컨테이너	27m ²	"		
295			세면장	조립식판넬	7.5m ²	"		
296			까데기	판넬	1식	"		
297			작업장	철파이프 판넬	86.4m ²	"		
298			사무실2	철재컨테이너	24m ²	"		
299			창고		18m ²	"		
300			담장	철파이프 강관	80M	"		
301			대문	철재대문	1식	"		
302			바닥	콘크리트	164m ²	"		
303			관정	식수용	1식	"		
304			영업보상	신대륙자원 (자재,고철,목재 간판등포함)	1식	"		
305			계근대	철재	1식	"		
306			감나무		1주	"		
307	축산리	173	벼		495m ²	백정덕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51	
308	축산리	173-2	콩		78m ²	한국농어촌공사		

연 번	소 재 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309	축산리	559-1	벼		1,788㎡	김순엽	군산시 경장동 517-9	
310	축산리	559-2	벼		1,848㎡	"	"	
311	축산리	559-3	벼		2,103㎡	이일홍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28-3	
312	축산리	559-4	벼		1,980㎡	한상돈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516-1	
313	축산리	559-5	벼		1,847㎡	"	"	
314	축산리	560-1	벼		1,836㎡	진호권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27-7	
315	축산리	560-2	벼		1,242㎡	"	"	
316	축산리	560-3	벼		2,328㎡	유덕수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18-4	
317	축산리	560-4	벼		2,118㎡	"	"	
318	축산리	560-5	벼		2,940㎡	한연수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516-1	
319	축산리	561-1	벼		3,612㎡	임규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29	
320	축산리	561-2	벼		3,752㎡	장인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261	
321	축산리	562-1	벼		2,772㎡	한상돈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516-1	
322	축산리	562-2	벼		3,372㎡	최현복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99	
323	축산리	562-3	벼		4,067㎡	"	"	
324	축산리	562-4	벼		1,776㎡	문두봉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541-2	
325	축산리	562-5	벼		786㎡	박혜숙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41	
326	축산리	562-6	벼		1,182㎡	최수풍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71-1	
327	축산리	563-1	벼		2,568㎡	이형식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15	
328	축산리	563-2	벼		3,938㎡	채응목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653-1	
329	축산리	563-3	벼		3,954㎡	최전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41-2	
330	축산리	563-4	벼		3,972㎡	조남훈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94-2	
331			오가피		10주	"	"	
332			관정	농사용	2식	"	"	
333	축산리	563-5	벼		4,122㎡	최수풍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71-1	
334	축산리	563-6	벼		1,902㎡	조철희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350	
335	축산리	563-7	벼		2,562㎡	유영우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63	
336	축산리	563-8	벼		4,007㎡	유길준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63	
337	축산리	563-9	벼		1,500㎡	"	"	
338	축산리	563-10	벼		1,214㎡	국 (재정경제원)		
339	축산리	563-11	벼		1,236㎡	"		
340			관정	농업용	1식	유길준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63	
341	축산리	565-2	관정	농업용	1식	"	"	
342	축산리	568-1	벼		2,284㎡	장화선외 3인	익산시 마동 158-15 삼호@1-906호	
343	축산리	568-2	벼		2,792㎡	"	"	
344	축산리	568-3	벼		478㎡	"	"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345	축산리	568-4	벼		1,548㎡	김양순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85	
346	축산리	568-5	벼		738㎡	송영자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3-1	
347	축산리	568-6	벼		2,736㎡	"	"	
348	축산리	568-7	벼		2,898㎡	"	"	
349	축산리	568-8	벼		4,026㎡	"	"	
350	축산리	568-9	벼		4,000㎡	김정호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85	
351	축산리	568-10	벼		4,024㎡	곽미영외 3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91-8	
352	축산리	568-11	벼		1,033㎡	진병덕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356-1	
353	축산리	568-12	벼		2,941㎡	"	"	
354	축산리	568-13	벼		1,856㎡	채수환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50-4	
355	축산리	568-14	벼		2,187㎡	"	"	
356	축산리	569-1	벼		832㎡	이용기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89	
357	축산리	569-2	벼		911㎡	송영자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3-1	
358	축산리	569-3	벼		2,480㎡	"	"	
359	축산리	569-4	벼		2,613㎡	이현진	익산시 동산동 1053-1 제일아파트	
360	축산리	569-5	벼		2,495㎡	이천식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15	
361	축산리	569-6	벼		994㎡	"	"	
362	축산리	569-7	벼		1,138㎡	한이성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18	
363	축산리	569-8	벼		2,088㎡	"	"	
364	축산리	569-9	벼		1,557㎡	"	"	
365	축산리	569-10	벼		1,756㎡	송영자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3-1	
366	축산리	569-11	벼		1,989㎡	"	"	
367	축산리	569-12	벼		1,665㎡	장판상의 3인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82-1	
368	축산리	569-13	벼		498㎡	진병윤	인천시 남구 용현동 481	
369	축산리	569-14	벼		2,161㎡	"	"	
370	축산리	570-1	벼		2,864㎡	임규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29	
371	축산리	570-2	벼		1,200㎡	채수환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50-4	
372	축산리	570-3	벼		4,085㎡	차상덕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62	
373	축산리	570-4	벼		4,045㎡	장인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241-7	
374	축산리	570-5	벼		1,600㎡	노성례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285-2	
375	축산리	570-6	벼		2,426㎡	"	"	
376	축산리	570-7	벼		1,644㎡	유선준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5	
377	축산리	569-1 591	사무실	철재컨테이너 (간판포함)	1식	양성일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289-25	
378			바닥	콘크리트	1식	"	"	
379			가이즈카 향나무		9주	"	"	
380			백일홍		57주	"	"	
381			소나무		21주	"	"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382	축산리	569-1 591	주목		19주	양성일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289-25	
383			동백나무		37주	"	"	
384			단풍나무		7주	"	"	
385			철쭉		20주	"	"	
386			석류나무		1주	"	"	
387			모과나무		4주	"	"	
388			꽃사과나무		38주	"	"	
389			남천		4주	"	"	
390			오엽송		1주	"	"	
391			사철나무		5주	"	"	
392			후박나무		2주	"	"	
393			목서		1주	"	"	
394			사과나무		3주	"	"	
395			목련		2주	"	"	
396			눈향나무		2주	"	"	
397			명자나무		1주	"	"	
398			영업보상	미래조경	1식	"	"	
399			관정	전력포함	1식	"	"	

군산시 고시 제2012-58호

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제한 기간 고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군산시 거주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일

군 산 시 장

주택건설지역	거 주 기 간	비 고
군 산 시	1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2-5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5. 7.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흥남동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
2. 사업주체
 - 1) 명 칭 : (유)에스와이주택건설
 - 2) 대표자 : 정 상 용
 - 3) 주 소 : 군산시 지곡동 532-3번지, 3층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서흥남동 763-16번지의 2필지
 - 나. 주택구분 : 공공분양
 - 나. 대지면적 : 1,871.00m²
 - 다. 건축면적 : 1,023.91m²
 - 라. 연 면 적 : 4,534.97m²
 - 마. 건축규모 : 연립주택 2동 6층, 64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업비 : 3,614,893천원
 - 아. 사업기간 : 2012. 05 ~ 2013. 01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0-4228)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5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지곡동 40-1번지일원	-	증)25,485	25,485	

나. 나.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35	군산시 지곡동 40-1번지일원	25,485	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공동주택 건설시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2.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11	30	주간선	990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대로2-9	일반 도로		전북고111 (‘96.6.29)	
변경	대로	2	11	30~33	주간선	990 (75)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대로2-9	일반 도로		전북고111 (‘96.6.29)	폭원확장
기정	중로	2	28	15	집산 도로	764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중로2-16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중로	2	28	15~18	집산 도로	764 (93)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중로2-16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폭원확장
기정	소로	1	257	10	국지 도로	194	대로 2-11	중로 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중로	3	64	12~13	집산 도로	194 (194)	대로 2-11	중로 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폭원확장
기정	소로	2	603	8	국지 도로	194	대로 2-11	중로 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03	8	국지 도로	194 (30)	대로 2-11	중로 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폭원확장
폐지	소로	2	601	8	국지 도로	117	소로 2-760	소로 2-761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폐지	소로	2	602	8	국지 도로	117	소로 2-760	소로 2-761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폐지	소로	2	760	8	국지 도로	117	소로 1-257	소로 2-603	일반 도로		‘96.6.1	
폐지	소로	2	761	8	국지 도로	117	소로 1-257	소로 2-603	일반 도로		‘96.6.1	

* ()는 폭원 변경부분 연장임

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대로 2-11	대로 2-11	· 일부구간(L=75m) · 폭원확장(B=증 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변경	중로 2-28	중로 2-28	· 일부구간(L=93m) · 폭원확장(B=증 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변경	소로 1-257	중로 3-64	· 전체구간(L=194m) · 폭원확장(B=증 2m~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변경	소로 2-603	소로 2-603	· 일부구간(L=30m, B=7.5m~8.0m) · 폭원 8m로 확장	· 기존 폭 8m 미확보 구간에 대한 폭원 8m확보	
폐지	소로 2-601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	
폐지	소로 2-602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	
폐지	소로 2-760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	
폐지	소로 2-761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	

다) 2)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0	제60공원	어린이공원	지곡동 43-10번지 일원	1,550	증)10	1,560	군산고210 (96.6.1)	

라)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0	제60공원	· 위치변경 - 지곡동 42-4 일원 → 지곡동 43-10번지 일원 · 면적변경 - 1,550㎡ → 1,560㎡(증 10㎡)	· 외부주민의 이용편의 제고 및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원을 공동주택부지 외곽으로 이동

나.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1BL	25,485	1-①	군산시 지곡동 40-1번지 일원	20,975	공동주택용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1-②	군산시 지곡동 43-10번지 일원	1,560	어린이공원(제60공원)
			1-③	군산시 지곡동 48-19번지 일원	2,089	도시계획도로(중로2-28)
			1-④	군산시 지곡동 40-11번지 일원	584	도시계획도로(중로3-64)
			1-⑤	군산시 지곡동 37-2번지 일원	199	도시계획도로(대로2-11)
			1-⑥	옥산면 당복리 952-1번지 일원	78	도시계획도로(소로2-603)

다.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 23% 이하	조례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조례 250% 이하
		높 이	· 21층 이하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적용

라.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지정된 구간 이외지역에서의 차량출입은 불허함
도로확폭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확폭 - 대로2-11호선 일부구간(L=75m) 확폭 : B= 증 3m - 중로2-28호선 일부구간(L=93m) 확폭 : B= 증 3m - 지정 소로1-257호선 전체구간(L=194m) 확폭 : B= 증 2m~3m - 소로2-603호선 일부구간(L=30m) 확폭 : B= 증 0m~0.5m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5월 11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지곡동 31-5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 외5개노선)사업
 - 나. 명 칭 : 아파트신축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노 선 명	시설결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비 고
				당 초			변 경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도 로	대로2-11	30	990	30	344	5,145	30	344	5,138	
	중로1-17	20	380	20	190	2,214	20	190	2,223	
	소로2-582	8	114	8	114	961	8	114	959	
	소로2-585	8	84	8	8	64	8	8	64	
	소로2-577	8	371	8	295	2,543	8	295	2,423	
	소로2-685	8	20	8	20	187	8	20	187	
계	6개노선		1,959		971	11,114		971	10,994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당초 군산시 조촌동 565-3 용경빌딩 2층
변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12층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당초 (주)민성디앤씨 대표 황종택
변경 (주)하나다올신타 대표 이병철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10. 7. ~ 2012. 12. 31.
변경 2010. 7. ~ 2014. 10.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실음생략(관련법에 의거 조치)
8. 관계도서 : 계제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61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고시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신축을 위한 군산 도시관리계획(수송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 전라북도 고시 제2012-113호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 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결정(변경)도서를 군산시 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5 월 일

1. 수송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4	수송1지구	수송동, 나운동 일원	552,152.5	-	552,152.5	건교교 208 (94.6.15)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공간시설, 방재시설 : 변경없음

2)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신설)

○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8	공공청사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수송동 792-7번지 일원	-	1,624.0	1,624.0	금회	수송 지구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공청사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18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공공청사 신설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신축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

○ 결정조서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80,717.3	79,093.3	획지수 : 300	획지수 : 295	80,717.3	79,093.3	
H1	H1	842.8	842.8	1	1	289.8	289.8	
				2	2	263.4	263.4	
				3	3	289.6	289.6	
H2	H2	581.6	581.6	1	1	290.9	290.9	
				2	2	290.7	290.7	
H3	H3	902.0	902.0	1	1	225.9	225.9	
				2	2	225.8	225.8	
				3	3	224.5	224.5	
				4	4	225.8	225.8	
H4	H4	1,345.2	1,345.2	1	1	284.3	284.3	
				2	2	258.8	258.8	
				3	3	258.7	258.7	
				4	4	258.9	258.9	
				5	5	284.5	284.5	
H5	H5	1,818.4	1,818.4	1	1	327.3	327.3	
				2	2	243.7	243.7	
				3	3	245.0	245.0	
				4	4	244.8	244.8	
				5	5	244.8	244.8	
				6	6	244.0	244.0	
				7	7	268.8	268.8	
H6	H6	1,908.1	1,908.1	1	1	292.3	292.3	
				2	2	264.9	264.9	
				3	3	265.3	265.3	
				4	4	264.9	264.9	
				5	5	264.8	264.8	
				6	6	265.1	265.1	
				7	7	290.8	290.8	
H7	H7	1,835.3	1,835.3	1	1	283.1	283.1	
				2	2	253.9	253.9	
				3	3	253.8	253.8	
				4	4	253.9	253.9	
				5	5	253.8	253.8	
				6	6	253.9	253.9	
				7	7	282.9	282.9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H8	H8	3,014.1	3,014.1	1	1	260.9	260.9	
				2	2	245.0	245.0	
				3	3	244.2	244.2	
				4	4	244.2	244.2	
				5	5	244.2	244.2	
				6	6	267.1	267.1	
				7	7	260.5	260.5	
				8	8	244.2	244.2	
				9	9	244.3	244.3	
				10	10	244.2	244.2	
				11	11	244.2	244.2	
				12	12	271.1	271.1	
H9	H9	2,689	2,689	1	1	278.2	278.2	
				2	2	259.5	259.5	
				3	3	259.4	259.4	
				4	4	259.5	259.5	
				5	5	287.6	287.6	
				6	6	278.6	278.6	
				7	7	259.5	259.5	
				8	8	259.5	259.5	
				9	9	259.5	259.5	
				10	10	287.6	287.6	
H10	H10	1,664.4	1,664.4	1	1	259.6	259.6	
				2	2	236.3	236.3	
				3	3	236.3	236.3	
				4	4	236.3	236.3	
				5	5	236.3	236.3	
				6	6	259.5	259.5	
H11	H11	1,938	1,938	1	1	367.1	367.1	
				2	2	239.6	239.6	
				3	3	239.6	239.6	
				4	4	239.6	239.6	
				5	5	239.6	239.6	
				6	6	239.6	239.6	
				7	7	472.9	472.9	
H12	H12	1,983.1	1,983.1	1	1	346.0	346.0	
				2	2	323.9	323.9	
				3	3	323.8	323.8	
				4	4	324.0	324.0	
				5	5	323.9	323.9	
				6	6	341.5	341.5	
H13	H13	1,799.1	1,799.1	1	1	491.2	491.2	
				2	2	258.1	258.1	
				3	3	258.1	258.1	
				4	4	258.1	258.1	
				5	5	258.1	258.1	
				6	6	275.5	275.5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H14	H14	1,791.4	1,791.4	1	1	274.5	274.5	
				2	2	257.1	257.1	
				3	3	257.1	257.1	
				4	4	257.1	257.1	
				5	5	257.1	257.1	
				6	6	488.5	488.5	
H15	H15	1,984.8	1,984.8	1	1	344.4	344.4	
				2	2	321.8	321.8	
				3	3	321.8	321.8	
				4	4	321.8	321.8	
				5	5	321.8	321.8	
				6	6	353.2	353.2	
H16	H16	2,894.6	2,894.6	1	1	263.8	263.8	
				2	2	246.7	246.7	
				3	3	213.2	213.2	
				4	4	213.4	213.4	
				5	5	246.9	246.9	
				6	6	263.3	263.3	
				7	7	264.0	264.0	
				8	8	246.6	246.6	
				9	9	213.2	213.2	
				10	10	213.3	213.3	
				11	11	247.0	247.0	
				12	12	263.2	263.2	
H17	H17	2,895.0	2,895.0	1	1	263.1	263.1	
				2	2	246.8	246.8	
				3	3	213.3	213.3	
				4	4	213.3	213.3	
				5	5	246.8	246.8	
				6	6	263.2	263.2	
				7	7	263.7	263.7	
				8	8	247.0	247.0	
				9	9	213.4	213.4	
				10	10	213.4	213.4	
				11	11	247.1	247.1	
				12	12	263.9	263.9	
H18	H18	2,895.8	2,895.8	1	1	263.6	263.6	
				2	2	247.1	247.1	
				3	3	213.3	213.3	
				4	4	213.4	213.4	
				5	5	247.0	247.0	
				6	6	263.6	263.6	
				7	7	263.6	263.6	
				8	8	247.0	247.0	
				9	9	213.3	213.3	
				10	10	213.3	213.3	
				11	11	246.9	246.9	
				12	12	263.7	263.7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H19	H19	2,891.4	2,891.4	1	1	262.9	262.9	
				2	2	246.5	246.5	
				3	3	213.1	213.1	
				4	4	213.1	213.1	
				5	5	247.0	247.0	
				6	6	262.7	262.7	
				7	7	263.2	263.2	
				8	8	246.8	246.8	
				9	9	213.1	213.1	
				10	10	213.2	213.2	
				11	11	247.0	247.0	
				12	12	262.8	262.8	
H20	H20	1,239.7	1,239.7	1	1	209.1	209.1	
				2	2	201.5	201.5	
				3	3	209.1	209.1	
				4	4	208.0	208.0	
				5	5	202.6	202.6	
				6	6	209.4	209.4	
H21	H21	654.2	654.2	1	1	225.0	225.0	
				2	2	204.4	204.4	
				3	3	224.8	224.8	
H22	H22	4,643.0	4,643.0	1	1	294.2	294.2	
				2	2	263.7	263.7	
				3	3	239.3	239.3	
				4	4	239.7	239.7	
				5	5	239.9	239.9	
				6	6	240.2	240.2	
				7	7	240.6	240.6	
				8	8	265.1	265.1	
				9	9	297.2	297.2	
				10	10	296.8	296.8	
				11	11	264.0	264.0	
				12	12	239.4	239.4	
				13	13	239.7	239.7	
				14	14	239.9	239.9	
				15	15	240.3	240.3	
				16	16	240.7	240.7	
				17	17	265.1	265.1	
				18	18	297.2	297.2	
H23	H23	2,566.6	2,566.6	1	1	300.1	300.1	
				2	2	280.9	280.9	
				3	3	280.7	280.7	
				4	4	280.9	280.9	
				5	5	280.8	280.8	
				6	6	280.8	280.8	
				7	7	280.8	280.8	
				8	8	280.8	280.8	
				9	9	300.8	300.8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H24	H24	2,575.2	2,575.2	1	1	301.1	301.1	
				2	2	281.7	281.7	
				3	3	281.8	281.8	
				4	4	282.0	282.0	
				5	5	281.6	281.6	
				6	6	281.8	281.8	
				7	7	281.9	281.9	
				8	8	281.8	281.8	
				9	9	301.5	301.5	
H25	H25	4,655.9	4,655.9	1	1	297.4	297.4	
				2	2	263.7	263.7	
				3	3	241.1	241.1	
				4	4	241.0	241.0	
				5	5	241.1	241.1	
				6	6	241.1	241.1	
				7	7	241.1	241.1	
				8	8	263.6	263.6	
				9	9	297.7	297.7	
				10	10	297.4	297.4	
				11	11	263.5	263.5	
				12	12	241.1	241.1	
				13	13	241.1	241.1	
				14	14	241.1	241.1	
				15	15	241.0	241.0	
				16	16	241.1	241.1	
				17	17	263.6	263.6	
				18	18	298.2	298.2	
H26	H26	5229.3	5229.3	1	1	298.5	298.5	
				2	2	276.7	276.7	
				3	3	279.4	279.4	
				4	4	281.2	281.2	
				5	5	282.7	282.7	
				6	6	287.4	287.4	
				7	7	290.1	290.1	
				8	8	292.6	292.6	
				9	9	326.0	326.0	
				10	10	298.4	298.4	
				11	11	276.9	276.9	
				12	12	279.5	279.5	
				13	13	281.4	281.4	
				14	14	282.8	282.8	
				15	15	287.3	287.3	
				16	16	289.6	289.6	
				17	17	292.7	292.7	
				18	18	326.1	326.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H27	H27	5,821.3	4,197.3	1	1	325.8	325.8	
				2	2	311.0	311.0	
				3	3	314.1	314.1	
				4	4	316.2	316.2	
				5	5	319.1	319.1	
				6	6	321.5	321.5	
				7	-	324.1	-	공1로 변경
				8	-	326.8	-	공1로 변경
				9	9	351.9	351.9	
				10	10	325.8	325.8	
				11	11	310.3	310.3	
				12	12	314.2	314.2	
				13	13	316.1	316.1	
				14	14	319.0	319.0	
				15	-	321.6	-	공1로 변경
				16	-	324.4	-	공1로 변경
				17	-	327.1	-	공1로 변경
				H28	H28	2,938.3	2,938.3	18
1	1	242.0	242.0					
2	2	242.0	242.0					
3	3	242.1	242.1					
4	4	242.1	242.1					
5	5	242.0	242.0					
6	6	258.4	258.4					
7	7	242.1	242.1					
8	8	242.1	242.1					
9	9	242.1	242.1					
10	10	242.1	242.1					
11	11	242.0	242.0					
H29	H29	2,606.2	2,606.2	12	12	259.3	259.3	
				1	1	296.7	296.7	
				2	2	285.5	285.5	
				3	3	285.0	285.0	
				4	4	284.2	284.2	
				5	5	285.0	285.0	
				6	6	287.0	287.0	
				7	7	288.9	288.9	
				8	8	290.7	290.7	
H30	H30	1,628.8	1,628.8	9	9	303.2	303.2	
				1	1	286.8	286.8	
				2	2	269.5	269.5	
				3	3	267.4	267.4	
				4	4	265.6	265.6	
				5	5	263.6	263.6	
H31	H31	1621.4	1621.4	6	6	275.9	275.9	
				1	1	247.8	247.8	
				2	2	225.1	225.1	
				3	3	225.1	225.1	
				4	4	225.2	225.2	
				5	5	225.2	225.2	
				6	6	225.1	225.1	
7	7	247.9	247.9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H32	H32	3,271.3	3,271.3	1	1	284.3	284.3	
				2	2	266.7	266.7	
				3	3	266.8	266.8	
				4	4	266.5	266.5	
				5	5	266.5	266.5	
				6	6	284.9	284.9	
				7	7	285.3	285.3	
				8	8	266.3	266.3	
				9	9	266.3	266.3	
				10	10	266.3	266.3	
				11	11	266.3	266.3	
				12	12	285.1	285.1	
H33	H33	1,760.6	1,760.6	1	1	288.1	288.1	
				2	2	288.2	288.2	
				3	3	307.8	307.8	
				4	4	285.4	285.4	
				5	5	285.3	285.3	
				6	6	305.8	305.8	
H34	H34	2,031.2	2,031.2	1	1	315.3	315.3	
				2	2	287.5	287.5	
				3	3	285.3	285.3	
				4	4	283.1	283.1	
				5	5	280.8	280.8	
				6	6	278.7	278.7	
				7	7	300.5	300.5	
	소 계	143,665.9	143,665.9	획지수 : 5	획지수 : 5	143,665.9	143,665.9	
A1	A1	55,796.4	55,796.4	1	1	39,708.3	39,708.3	
				2	2	16,088.1	16,088.1	
A2	A2	9,431.9	9,431.9	1	1	9,431.9	9,431.9	
A3	A3	78,437.6	78,437.6	1	1	36,157.8	36,157.8	
				2	2	42,279.8	42,279.8	
	소 계	18,559.6	18,559.6	획지수 : 38	획지수 : 38	18,559.6	18,559.6	
NC1	NC1	1,595.5	1,595.5	1	1	418.9	418.9	
				2	2	379.9	379.9	
				3	3	378.9	378.9	
				4	4	417.8	417.8	
NC2	NC2	2,402.2	2,402.2	1	1	507.8	507.8	
				2	2	462.3	462.3	
				3	3	461.6	461.6	
				4	4	462.2	462.2	
				5	5	508.1	508.1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NC3	NC3	2,573.8	2,573.8	1	1	600.1	600.1	
				2	2	497.4	497.4	
				3	3	474.4	474.4	
				4	4	474.4	474.4	
				5	5	527.5	527.5	
NC4	NC4	1,714.8	1,714.8	1	1	422.8	422.8	
				2	2	420.7	420.7	
				3	3	420.7	420.7	
				4	4	450.6	450.6	
NC5	NC5	3,014.7	3,014.7	1	1	452.8	452.8	
				2	2	422.4	422.4	
				3	3	422.5	422.5	
				4	4	422.4	422.4	
				5	5	422.4	422.4	
				6	6	422.4	422.4	
				7	7	449.8	449.8	
NC6	NC6	2,294.8	2,294.8	1	1	664.4	664.4	
				2	2	791.8	791.8	
				3	3	836.8	836.8	
NC7	NC7	1,927.6	1,927.6	1	1	473.6	473.6	
				2	2	473.2	473.2	
				3	3	473.3	473.3	
				4	4	507.5	507.5	
NC8	NC8	3,036.4	3,036.4	1	1	538.4	538.4	
				2	2	489.8	489.8	
				3	3	489.8	489.8	
				4	4	489.8	489.8	
				5	5	489.8	489.8	
				6	6	538.8	538.8	
	소 계	33,856.6	33,856.6	획지수 : 63	획지수 : 63	33,856.6	33,856.6	
CE1	CE1	2,248.0	2,248.0	1	1	588.7	588.7	
				2	2	535.7	535.7	
				3	3	535.9	535.9	
				4	4	587.7	587.7	
CE2	CE2	5,280.1	5,280.1	1	1	599.7	599.7	
				2	2	577.4	577.4	
				3	3	608.5	608.5	
				4	4	580.8	580.8	
				5	5	556.3	556.3	
				6	6	568.4	568.4	
				7	7	568.5	568.5	
				8	8	629.5	629.5	
				9	9	591.0	591.0	
CE3	CE3	2,305.4	2,305.4	1	1	580.6	580.6	
				2	2	559.1	559.1	
				3	3	559.6	559.6	
				4	4	606.1	606.1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CE4	CE4	3,463.8	3,463.8	1	1	491.9	491.9	
				2	2	590.7	590.7	
				3	3	384.4	384.4	
				4	4	384.6	384.6	
				5	5	384.4	384.4	
				6	6	381.6	381.6	
				7	7	446.2	446.2	
				8	8	400.0	400.0	
CE5	CE5	1,356.4	1,356.4	1	1	407.6	407.6	
				2	2	399.6	399.6	
				3	3	549.2	549.2	
CE6	CE6	2,085.2	2,085.2	1	1	603.6	603.6	
				2	2	499.4	499.4	
				3	3	982.2	982.2	
CE7	CE7	2,721.5	2,721.5	1	1	443.6	443.6	
				2	2	443.2	443.2	
				3	3	475.7	475.7	
				4	4	443.2	443.2	
				5	5	442.9	442.9	
				6	6	472.9	472.9	
CE8	CE8	2,907.4	2,907.4	1	1	598.2	598.2	
				2	2	576.7	576.7	
				3	3	550.2	550.2	
				4	4	550.3	550.3	
				5	5	632.0	632.0	
CE9	CE9	2,804.4	2,804.4	1	1	479.0	479.0	
				2	2	446.6	446.6	
				3	3	477.5	477.5	
				4	4	476.1	476.1	
				5	5	446.6	446.6	
				6	6	477.6	477.6	
CE10	CE10	1,661.4	1,661.4	1	1	565.9	565.9	
				2	2	529.2	529.2	
				3	3	566.3	566.3	
CE11	CE11	3,124.5	3,124.5	1	1	536.9	536.9	
				2	2	488.2	488.2	
				3	3	534.2	534.2	
				4	4	536.9	536.9	
				5	5	488.2	488.2	
				6	6	540.1	540.1	
CE12	CE12	1,959.2	1,959.2	1	1	633.1	633.1	
				2	2	658.4	658.4	
				3	3	667.7	667.7	
CE13	CE13	1,940.3	1,940.3	1	1	665.2	665.2	
				2	2	486.3	486.3	
				3	3	788.8	788.8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39,618.3	39,618.3	획지수 : 51	획지수 : 50	39,618.3	39,618.3	
C1	C1	4,185.6	4,185.6	1	1	1,150.2	1,150.2	
				2	2	901.2	901.2	
				3	4	900.8	900.8	
				4	3	1,233.4	1,233.4	
C2	C2	3,184.9	3,184.9	1	4	641.0	641.0	
				2	5	600.0	600.0	
				3	1	600.0	600.0	
				4	2	599.8	599.8	
C3	C3	4,015.8	4,015.8	5	3	744.1	744.1	
				1	4	677.0	677.0	
				2	5	621.1	621.1	
				3	6	621.1	621.1	
C4	C4	2,646.3	2,646.3	4	1	621.1	621.1	
				5	2	760.7	760.7	
				6	1	714.8	714.8	
				1	2	1,113.1	1,113.1	
C5	C5	2,485.5	2,485.5	2	3	1,533.2	1,533.2	
				1	4	560.7	560.7	
				2	5	485.3	485.3	
				3	1	485.3	485.3	
C6	C6	2,844.1	2,844.1	4	2	493.6	493.6	
				5	3	460.6	460.6	
				1	4	416.8	416.8	
				2	5	416.6	416.6	
C7	C7	6,251.6	6,251.6	3	6	389.7	389.7	
				4	7	390.0	390.0	
				5	1	391.3	391.3	
				6	2	390.0	390.0	
C8	C8	4,267.6	4,267.6	7	3	449.7	449.7	
				1	4	848.5	848.5	
				2	1	764.9	764.9	
				3	2	2,588.3	2,588.3	
C9	C9	2,921.3	2,921.3	4	1	2,049.9	2,049.9	
				1	2	929.8	929.8	
				2	3	3,337.8	3,337.8	
				1	1	779.1	779.1	
C10	C10	3,910.0	3,910.0	2	2	769.2	769.2	
				3	3	1,373.0	1,373.0	
				1	4	508.3	508.3	
				2	5	497.6	497.6	
C11	C11	2,905.6	2,905.6	3	6	441.0	441.0	
				4	7	511.9	511.9	
				5	8	508.2	508.2	
				6	6	497.6	497.6	
C11	C11	2,905.6	2,905.6	7	7	441.0	441.0	
				8	8	504.4	504.4	
				1	1	764.6	764.6	
				2	2	688.5	688.5	
C11	C11	2,905.6	2,905.6	3	3	688.4	688.4	
				4	4	764.1	764.1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12,229.9	12,229.9	-	-	12,229.9	12,229.9	
녹1	녹1	1,686.5	1,686.5	-	-	1,686.5	1,686.5	
녹2	녹2	1,248.9	1,248.9	-	-	1,248.9	1,248.9	
녹3	녹3	697.2	697.2	-	-	697.2	697.2	
녹4	녹4	1,179.2	1,179.2	-	-	1,179.2	1,179.2	
녹5	녹5	1,089.2	1,089.2	-	-	1,089.2	1,089.2	
녹6	녹6	3,597.0	3,597.0	-	-	3,597.0	3,597.0	
녹7	녹7	660.7	660.7	-	-	660.7	660.7	
녹8	녹8	2,071.2	2,071.2	-	-	2,071.2	2,071.2	
	소 계	9,215.9	9,215.9	-	-	9,215.9	9,215.9	
어1	어1	3,825.4	3,825.4	-	-	3,825.4	3,825.4	
어2	어2	2,092.2	2,092.2	-	-	2,092.2	2,092.2	
어3	어3	1,800.0	1,800.0	-	-	1,800.0	1,800.0	
어4	어4	1,498.3	1,498.3	-	-	1,498.3	1,498.3	
	소 계	40,471.6	40,471.6	-	-	40,471.6	40,471.6	
근1	근1	21,737.2	21,737.2	-	-	21,737.2	21,737.2	
근2	근2	4,605.6	4,605.6	-	-	4,605.6	4,605.6	
근3	근3	1,184.2	1,184.2	-	-	1,184.2	1,184.2	
근4	근4	12,944.6	12,944.6	-	-	12,944.6	12,944.6	
	소 계	4,463.9	4,463.9	-	-	4,463.9	4,463.9	
주1	주1	2,465.2	2,465.2	-	-	2,465.2	2,465.2	
주2	주2	1,998.7	1,998.7	-	-	1,998.7	1,998.7	
	소 계	25,730.2	25,730.2	-	-	25,730.2	25,730.2	
학1	학1	12,326.8	12,326.8	-	-	12,326.8	12,326.8	
학2	학2	13,403.4	13,403.4	-	-	13,403.4	13,403.4	
	소 계	1,692.0	1,692.0	-	-	1,692.0	1,692.0	
유1	유2	799.8	799.8	-	-	799.8	799.8	
유2	유2	892.2	892.2	-	-	892.2	892.2	
	소 계	4,245.7	4,245.7	-	-	4,245.7	4,245.7	
종1	종1	1,423.2	1,423.2	-	-	1,423.2	1,423.2	
종2	종2	1,498.1	1,498.1	-	-	1,498.1	1,498.1	
종3	종3	1,324.4	1,324.4	-	-	1,324.4	1,324.4	
	소 계	-	1,624.0	-	-	-	1,624.0	
공1	공1	-	1,624.0	-	-	-	1,624.0	공공청사 신설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H27	H27	▶단독주택용지 H27 블록 내 획지 7, 8, 15, 16, 17를 기타시설용지 공1로 변경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신축
-	공1		

2) 획지의 분할 및 병합 등에 관한 기준 :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상업용지 : 변경없음

2) 기타시설용지(변경)

- 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주차장 : 변경없음
- 공공청사(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배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진출입구 설치시, 신체장애인을 위하여 턱낮추기(3cm 이하) 또는 경사로 설치(폭 1.2m이상, 기울기 1/18이하) •가로면에 노출되어 가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후면, 측면은 전면과 동일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색채는 2.5GY~10.0BG, 7~9 / 3이하 사용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먼셀표색계를 기준으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색 : 2.5YR~10.0YR 8이상 / 2이하, N9.0 이상 - 보조색 : 10.0YR~7.5Y, 6~8 / 2~6 - 강조색 : 2.5YR~10.0GY, 4~6 / 6~10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건축한계선 2m : 모든 도로에 면한 부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수성재료 사용한 생태주차장 설치 •건물옥상에 녹화 시행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일반사항(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p>☑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내 주간선도로에서 진출입구 설치 불가 ◦차량출입불허구간 : 사업지구내 광로 2-3호선, 대로2-7호선변 및 주요간선도로, 가구단변등에 지정 ◦차량진출입 허용 및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필지가 2개도로 이상에 접할 경우 도로 위계가 낮은 도로에 진출입구 설치 ◦공동주택지 진출입구가 인접한 경우 출입구 이격거리는 충분히 확보 ◦공동주택지 반대 블록의 출입구가 3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출입구 위치를 마주보게 설정 ◦차량진출입구는 1개획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이웃한 획지 간의 공동출입구 개설이 가능(공동주차출입구) 	
H1~H34, A1~A3, NC1~NC8, CE1~CE13	H1~H34, A1~A3, NC1~NC8, CE1~CE13		<p>☑ 주차장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각 시설별 주차공급방안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세대당 1.42대 이상, 군산시 주차장조례 부설주차장 확보 규정과 비교하여 강화된 규정 적용 - 공동주택 : 60㎡이하 1.09대/세대, 60㎡~85㎡ 1.24대/세대, 85㎡초과 1.34대/세대 - 근린생활시설용지 : 160㎡당 1대 이상(연면적 1000㎡ 미만은 200㎡ 당 1대 이상) - 상업시설,상업용지 : 교통영향평가를 수용하여 법정주차면수의 120% 이상 확보 - 기타시설 : 교통영향평가를 수용하여 법정주차면수 이상 확보 ◦소유 주차대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부지는 당해 건축물이 입지 하는 가구(블럭)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함 	
C1~C11, 학1, 학2, 유1, 유2, 종1~종3, 주1, 주2	C1~C11, 학1, 학2, 유1, 유2, 종1~종3, 주1, 주2, 공1		<p>☑ 전면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효율적으로 소음을 경감하기 위해 식재 권장 ◦조경시설(가로수, 나무벤치, 돌의장 등)이외에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상업용지의 경우 남북로 및 간선도로변 전면공지에는 주차행위, 물건적치 등이 불가능하도록 일정간격(1.5M-권장)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위하여 지하부에 1.2M이상의 토사를 확보하도록 함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토록 하며, 신체 장애인용 경사로 등을 설치 ◦보도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H1~H34, A1~A3, NC1~NC8, CE1~CE13 C1~C11, 학1, 학2, 유1, 유2, 종1~종3, 주1, 주2	H1~H34, A1~A3, NC1~NC8, CE1~CE13 C1~C11, 학1, 학2, 유1, 유2, 종1~종3, 주1, 주2, 공1	<p>☑ 공개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조성방식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적용 ◦바닥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체장애이용경사도를 설치 <p>☑ 대지안 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면적, 식재기준, 조경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적용 ◦녹지공간 확보 : 공동주택단지내에서는 지하주차장을 권장 ◦상업시설용지 및 상업용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부(남북로변)의 건축물 전면에는 키작은 관목류나 초화류 위주로, 음지에 강한 수종을 식재 - 간선부(남북로변)에 휴게시설(돌의자, 벤치 등)의 설치시에는 차양이나 지붕구조의 설치를 금지 - 간선부(남북로변)은 주변과 조화되는 포장 및 포장폐턴을 유지 - 간선도로변 주차장 설치시에는 차폐조경 설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측면이격거리(1m)에 의해 발생된 측면공지는 조경공간 또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p>☑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문 : 투시형, 높이 1.8m 이하, 각각부(모퉁이변)에 설치 금지 - 담장 : 생울타리, 높이 1.2m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상업용지에서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 금지 ◦기타시설용지(동사무소, 파출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 - 생울타리를 사용 ◦주차장용지는 공공조경 설치 <p>☑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관한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계획표 참조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및 군산시조례에 의한 규정을 적용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바. 경관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사.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II. 수송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관련도면은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0-44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고시 제2012-62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5월 11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8	주차장	공영 주차장	사정동 174	8,300	감)3,274	5,026	군산고242 (2003.4.17)	

2. 군산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2-64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5. 15. ~ 5. 29.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60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변경 : 2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폐지 : 8건

종전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램				

○ 관련지번 변경 : 92건

변경된 지번주소	종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971호

도시계획시설(시장:원예공판장)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시장:원예공판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5월 4일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수송동 25-17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원예공판장)사업
 - 2) 명 칭 : 시장(원예공판장)시설 주차부지 확충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m ²)	실시계획인가		비 고
			기시행 면적(m ²)	금회시행면적(m ²)	
시장	원예공판장	28,039	14,923	3,937	주차장조성
계		28,039	14,923	3,937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수송동 24-13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5. ~ 2013. 04.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수송동	25-17	답	3,937	3,937	군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군산시 수송동 24-13			

군산시 공고 제2012-9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5월 4일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산북동 1-38번지의 16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하나리움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선명	시설결정		기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비고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 (m)	당 초			변 경			
						폭원 (m)	연장 (m)	면적 (㎡)	폭원 (m)	연장 (m)	면적 (㎡)	
도로	중로2-70	15	40	8	40	7	40	274.1	7	40	274.1	확폭구간개설
	소로2-360	8~12	1,097	8	1,097	4	217	868	4	284	1,074	확폭구간개설
	소로2-358	8~14	400	8	400	3~6	340	1,485	-	-	-	
	중로3-66	11~14	400	8	400	-	-	-	3~6	400	1,803	확폭구간개설
계	4개노선		1,937		1,937		597	2,627.1		724	3,151.1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94-1
 - 2) 사업시행자 성명 : (주)하나건설 대표 박안수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1. ~ 2014. 1.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030호

보 상 계 획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등을 군산시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9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옥구수왕마을 안길확.포장공사

2. 사 업 위 치 : 옥구읍 수산리 수왕마을 지내

3. 사 업 개 요 : L= 0.41km, B= 5.0m

4. 보 상 시 기 : 2012. 5. ~ 2012. 7.(3개월)

5. 보 상 대 상 : 옥구읍 수산리 346-13 외 19필지

6. 사업시행자 : 군 산 시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산정 : 공인감정평가업자 2명을 선정하여 평가액에의한 소유자별보상

나.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1명 선정

→ 토지소유자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8. 보 상 절 차 : 협의보상계약에 의한 보상

9. 열람기간 : 2012. 5. 10 ~ 2012. 5. 24 (15일간)

10. 열람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063-450-4487)

11. 기타사항

가. 토지 및 물건조서는 군산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음.

나.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를 대신합니다.

12. 편입물건조서

○ 토 지

위 치	지 번
옥구읍 수산리	346-13, 346-6, 346-1, 344-1, 344-2, 311-2, 310-2, 317-1, 317-2, 323-2, 336-2, 336-1, 326-4, 326-3, 335-1, 335-2, 338-2, 337-2, 339-2, 333-4